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629

제출년월일 : 2000. 6. 1.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정사유

○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치매전문요양원의 운영내용(안 제4조)

○ 치매전문요양원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안 제5조)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안 제7조)

○ 치매전문요양원 수탁자의 의무(안 제10조)

○ 위탁의 취소사유(안 제11조)

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4호및제35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지침(월별비용수납한도액)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 이라한다)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 이라 함은 군수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 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은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이라 칭하고,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1번지내에 둔다.

제4조(요양원의 운영내용) 요양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3.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5조(요양원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1. 65세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2.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성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입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 하였을때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하며 월별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입소비용등의 감면) 군수는 65세 이상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요양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제8조(위탁·수탁협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요양원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을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 노인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요양원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조례에의한 처분과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3. 위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
4. 요양원의시설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때

제12조(지도 감독) ①군수는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거 지도.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 는 군 관계부서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관계 법령및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